

#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#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1. 2. 23.

발 의 자 : 이재병 의원

(찬성자 8인)

## □ 제안이유

가. 도서관을 이용하는 취업준비자, 수험생, 일반인 등을 위해 휴관일을 줄여 개방함으로써 더 많은 교육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.

## □ 주요내용

가. 도서관의 휴관일인 공휴일과 정기휴관일을 줄여 개방하도록 규정함.  
(안 제16조)

나. 도서관의 휴관일을 줄여 개방토록 하는 것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. (부칙)

## □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

나. 비용추계서 1부.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##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.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제4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날
2. 관장이 정하는 매월 두 번의 정기휴관일

부칙

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16조(개관)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. 다만, 도서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립도서관장(이하 “관장”이라 한다)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1. 「<u>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</u>」 제2조 중 제1호를 제외한 각 호에 해당하는 공휴일</p> <p>2. <u>정기휴관일</u></p> <p>3. (생   략)</p>	<p>제16조(개관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「<u>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</u>」 제2조제4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날</p> <p>2. <u>관장이 정하는 매월 두 번의 정기 휴관일</u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

##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

관계법령	<input type="checkbox"/> 도서관법 -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관련법규 정비대상	
관련자료	

# 관계법령 발취사항

## 【도서관법】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# 비용추계서

## 1. 재정수반요인

- 도서관 공휴일과 정기휴관일을 축소 개방에 따른 효율적인 청사운영을 위해 인원 충원 및 청사관리에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음.

## 2. 비용추계서 첨부 근거규정

-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3항

## 3. 비용추계 요약

### ● 소요예산 : 184,145천원

#### ○ 산출내역

연 간 운영비 : 184,145천원

⇒ 비정규직 사서 1명, 청사관리 용역비, 공공요금 등

#### ○ 연간 운영비 산출근거(세부내역 별첨)

구분	소요예산(천원)		추가소요예산	비 고
	현행	정기휴관일에 열람실 개방		
비정규직 사서 인건비(열람지도)	38,924	58,386	19,462	1명 증
청사관리 용역비	1,080,000	1,206,000	126,000	
공공요금 등	266,400	305,083	38,683	
계	1,385,324	1,569,469	184,145	

## 4. 작 성 자

- 기획행정위원회 이 재 병 의원

● 연간 운영비 세부산출근거

구분	소요예산(원)		추가 소요예산
	현행	도서관 개방	
비정규직 사서 인건비 (열람지도)	- 무기계약근로자 연봉액(1명) : 2,134,640원×12월=25,615,680원  - 연차수당 = 790,000원 - 재해보험 = 934,000원  - 기간제근로자(1명) : 10,584,000원×1명=10,584,000원 - 4대보험 : 1,000,000원	- 19,461,840원×3명=58,385,520원	<b>1명 증</b>
소계	38,923,680원(2명)	58,385,520원(3명)	<b>19,461,840</b>
청사관리 용역비	- 청사관리(300일) : 90,000,000×12월=1,080,000,000	- 청사관리 용역비 : <b>1,206,000,000(335일)</b> 산출식: 기존 1일단가 : 1,080,000,000 ÷ 300 = 3,600,000원 추가일수 : 3,600,000 × 35일 = 126,000,000원	<b>126,000,000</b>
공공요금 등	266,400,000원 <b>(2010년 기준액)</b>	305,082,740원	<b>38,682,740</b>
계	<b>1,385,323,680원</b>	<b>1,569,468,260원</b>	<b>184,144,580</b>